

지급명령신청서

채 권 자 주식회사 새봄렌탈 (법인등록번호 110111-0000019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00, 0층

대표자 대표이사 이다온

채 무 자 주식회사 라온스튜디오 (법인등록번호 110111-0000020)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00, 0층

대표자 대표이사 박하람

청 구 취 지

-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,6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음 각 기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가. 금 3,600,000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
 -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-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.

독촉절차비용

금 69,280원(내역: 송달료 67,680원, 인지대 1,600원)

청 구 원 인

1. 촬영장비 대여계약과 임대료 약정

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. 7. 6. 시네마 카메라 3대, 렌즈 3개와 LED 조명 4대를 2026. 7. 8.부터 2026. 7. 17.까지 대여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. 총 임대료는 금 4,800,000원이고, 채무자는 계약일에 임대료 선지급액 금 1,200,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금 3,600,000원은 반환검수 후 2026. 7. 20.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.

2. 장비 인도와 사용

채권자는 2026. 7. 8. 계약서의 장비목록과 자산번호를 대조하여 카메라, 렌즈 및 조명 전부를 채무자 담당자에게 인도하였습니다. 양측은 인도확인서에서 수량과 구성품, 외관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하였고, 채무자는 약정 기간 동안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.

3. 장비 반환과 검수 완료

채무자는 2026. 7. 17. 장비와 구성품을 모두 반환하였습니다. 양측 담당자는 같은 날 반환·검수확인서에 품목별 수량이 일치하고 외관과 작동에 이상이 없으며 연장사용료나 파손비 등 추가 정산 항목이 없다고 기재하고 서명하였습니다.

4. 지급기 경과와 잔액 미지급

채무자는 약정한 2026. 7. 20.까지 임대료 잔액 금 3,600,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 채권자가 2026. 7. 24. 청구서와 함께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지급 촬영장비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촬영장비 대여계약서 및 견적서 1통
2. 장비목록, 인도확인서 및 인도 사진 1통
3. 임대료 선지급액 계좌이체내역 1통
4. 반환·검수확인서 및 반환 사진 1통
5. 임대료 청구서, 지급 요청 전자우편 및 입금계좌 거래내역 1통

2026. 8. 28.

채권자 주식회사 새봄렌탈 (서명 또는 날인)

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